
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안자

- 의안번호 : 제2855호
- 제출일자 : 2023. 9. 26.
-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2. 개정 이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종로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
○ 2023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1

2) 입법예고: 2023. 8. 25. ~ 9. 14. (20일간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2

5. 검 토 의 견

□ 조례안 주요 내용

○ 개정 배경

본 개정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(안 제5조)하려는 것으로, 안 제5조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임.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신설 2014. 5. 28.>

이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종합 검토의견 :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 [전문개정 2011. 8. 4.]